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① 센터장
 - ② 수급자(보호자)대표
 - ③ 종사자 대표
 - ④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⑤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⑥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⑦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4.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보고, 심의한다.

1. 기관운영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0.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이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 위원 2/3의 결정에 따라 회의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법인 정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된다.

- ①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시설에서 개정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③ 시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정한다.
- ④ 운영규정 개정이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요구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의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재적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 시설운영규정의 승인을 얻는다. 또한, 법인의 시설운영규정이 개정되면 운영위원회 규정도 당연 개정된다.

제8조(경비,수당 등)

- ① 이사회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회의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기관 직원과 관계공무원은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회의록)

- ① 이 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시설 내에 비치한다.
- ② 이 회의 담당자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시설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활동보고) 이 회의는 법인이사회에 연 1회 연간활동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해산) 유린원광방문요양센터의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5월 12일에 개정 시행한다.
3. (2차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일에 개정 시행한다.
4. (3차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5일에 개정 시행한다.
5. (4차 개정) 2018년 12월 3일 운영규정과 분리
6. (5차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7. (6차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1월 2일 개정 시행한다.
8. (7차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9. (8차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08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 10.(9차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1월 9일 개정 시행한다.